당 진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176호 2018. 09. 14.(금)

고 시

◦ 제2018-230호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제2018-1718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

◦ 제2018-1722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1

◦ 제2018-1726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 27

회 람						

발행 **당 진 시** (편집 홍보정보담당관 ☎ 350-3144)

당진시 고시 제2018-23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10.

당 진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244-18 외 4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도로명주소(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산로 21-28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9. 10.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09/10〉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정미면 사관리 28-9	정미면 정미로 244-18	2018-09-1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정미면을 지나는 도로
2	대호지면 두산리 577-8, 577-1	대호지면 도화맥길 89	2018-09-1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도화맥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송악읍 봉교리 336-110	송악읍 섭섭길 99-115	2018-09-1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섭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고대면 대촌리 409	고대면 큰말선길 12	2018-09-1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큰말선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5	송악읍 한진리 337-29	송악읍 한진2길 35-1	2018-09-1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 도로명주소 변경 내역 09/10 >

	지번주소(토지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비 고
1	삼봉리 535-2	삼봉산로 21-28	삼봉산로 21-24	민원요청	

당진시 공고 제2018-1718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9. 12.

당 진 시 장

1. 제정이유

가. 당진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나.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 위원회"구성, "에너지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설치·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당진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에너지 계획,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9조)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5조)

라. 에너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21조)

마. 에너지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3. 관계 법령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8. 9. 12. ~ 2018. 10. 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0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당진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으로 의견서(붙임) 제출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지역경제과(에너지자원팀)

-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우편번호: 31773)
- 전화: 041)350-4032, FAX: 041)350-4049, E-mail : pearly@korea.kr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당진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나.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 위원회"구성, "에너지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설치·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당진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에너지 계획,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9조)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제15조)

라. 에너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21조)

마. 에너지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에너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결과 : 의견사항 없음 또는 별첨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3.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분산형 에너지 보급
6.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7.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노력

제2장 에너지 계획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9.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10.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사항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

제6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5.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시설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 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자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제10조(보급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당진시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

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 설치대상자(소유자)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관리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16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환경국장, 에너지정책 담당부서 과장, 환경정책 담당부서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2명

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시민단체

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5. 그 밖에 교육·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2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에너지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에너지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한다.

< 관 계 법 령 >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당진시 에너지 관리 조례

- 제11조(보급지원) / 제12조(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 제16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제22조(수당) / 제23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급지원, 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 지원(2018년 80백만원 ⇒ 2019년 90백만원)

※ 기타 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사업 국도비 매칭 의무

- 에너지 센터 운영비 : 200백만원

나. 추계 결과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매년 약10% 증가 지원 : 향후 5년간 550백만원 소요
- 에너지 센터 운영비 : 향후 5년간 1,000백만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등)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90	300	310	320	330	1,550
세 출		290	300	310	320	330	1,550
재원 조달							
자체	소 계	290	300	310	320	330	1,550
수입	지방세	290	300	310	320	330	1,550

4. 작성자 :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장 김 지 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당진시 공고 제 2018-1722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부 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 구체화 필요

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담 사무국을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명확화(제3조)

나. 분과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및 구성형태 구체화(안 제10조)

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 운영(안 제11조)

-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 사무국 운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조례개정으로 중복 문구 삭제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9. 13. ~ 2018. 10. 4.(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일 18:00까지 당진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우편번호 : 31773)

전화 : 041-350-4013 팩스 : 041-350-4049 이메일 : amini5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전문적·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3조(구성) ① ---------- ---------- ----------.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전문적·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② 협의회·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공고 제2018-1726호

[✓] 통행의 금지·제한
[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 [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14일

당진시장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송악103호(중복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에서 제23항에 포함되는 모든 차마	구간	송악읍 복운리 197-13번지 부터 송악읍 중흥리 204-8번지 까지
기간	2018년 09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15일까지		
이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진행 중 배수관 설치 공사 진행에 따른 차량 통행 불가능.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우회도로 노선안내

